### [서식 예]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

#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		수일자		. 13 1 1 1	처리기간	(농	4일 업경영계획서를 않는 경우에는	
농 지 취득자 (신청인)	①성 명 (명 칭)			②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⑤취득자의 구분			
	③주 소						농업인	신규 영농	주말 • 체험영농	법인 등
	④전화번호									
취 득 농지의 표 시	⑥소 재 지						⑩농지구분			
	시・군	구・읍・면	리・동	⑦지번	<b>®지목</b>	⑨면적(m²)	농업진흥지역		진흥지역	영농여건
							진흥구역	보호구역	밖	불리농지
⑪취득원업	인									
⑫취득목적	적 농업:	경영	<i>:</i> 처	주말 •  험영농		농지전용		시험 실습	•연구• 지용 등	

「농지법」 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농지취득자(신청인)

(서명 또는 인)

## 시장 • 구청장 • 읍장 • 면장 귀하

첨부서류	<ol> <li>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(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(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(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농지전용허가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)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(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/ol>	수수료 : 「농지법 시행 령」 제74조에 따름
담당공무원 확인 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

#### 기재시 유의사항

-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.
-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.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.
-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○표를 합니다.
  - 가.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"농업인"
  - 나.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"신규영농"
  - 다.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・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"주말・체험영농"
  - 라.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, 그 밖의 법인은 "법인 등"

[취득농지의 표시]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.

- ®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·답·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.
- ⑩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·보호구역·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○표를 합니다.
- ⑪란은 매매・교환・경락・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.
- ® 란은 농업경영 / 주말·체험영농 / 농지전용 / 시험·연구·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○표를 합니다.
- ※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/ 이행강제금 부과 / 징역·벌금 등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.

#### 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